

『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6월 13일

제23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이 관 응

나. 제안이유

-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금액을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의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(안 별표 1)
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자민원 신청시 무료,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수수료 무료로 변경

- 현행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을 위한 표준 수수료 및 상위법에 맞도록 개선 (안 별표 1)
-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(안 별표 2)
 - 부과기준 'MB(메가바이트)'에서 '무료'로 변경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
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-10호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및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
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수수료 징수 관련 부서 및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경 자

- 본 『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금액을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 기준의 명확성을 도모하고 민원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은,

-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‘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-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’ 권고(2018. 5. 28.)를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 증명서 수수료를 당초 800원에서 무료로 변경하고,
-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-10호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에 ‘전자민원(인터넷) 신청시 무료’ 규정을 명시함.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,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5,000원에서 10,000원으로 변경하고,
- 환지예정지 및 체비지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「도시개발법」과 사도 개설 및 축조변경 허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「사도법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수수료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음.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전자파일 수수료 복제기준 개정(2017.12.21.시행)에 따라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1MB 초과시 1MB마다 부과하는 100원의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항목을 추가하였음.

○ 검토 결과,

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,
- 상위 법령에 근거한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